



# 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의견조회

1. 관련 :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

2. 우리부에서는 「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」 일부개정(안)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14.2.14(수)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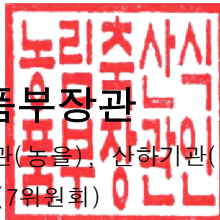
(기관명, 부서명, 담당자, 연락처)

개정안	수정안	수정 사유

※ 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

붙임 축산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결정 고시 개정(안) 1부. 끝.

##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
수신자 각 시도(나 01-18),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소속기관(농을), 산하기관(농병), 중앙행정기관(19부), 중앙행정기관(2원), 중앙행정기관(4처), 중앙행정기관(7위원회)

사무관 민동명 축산경영과장 전결 2024. 2. 2. 이연섭

협조자

시행 축산경영과-730 (2024. 2. 2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농림축산식품부 (어진동)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338 팩스번호 044-868-0461 / [dmin@korea.kr](mailto:dmin@korea.kr) / 대한민국 공개